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20나200246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20나20024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1. 20 선고 2018가단9227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형욱

피고, 항소인1. B

2. D

3. E

변론 종결2020. 10. 20.

판결 선고2020. 11. 17.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1. 20. 선고 2018가단92277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고양시 일산동구 M 임야 944㎡ 중 제1심 판결 별지 감정도(2) 표시 30 내지 34, 11, 12, 35, 13, 14, 36 내지 38,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지상 건물 73㎡를 철거하고, 같은 토지 73㎡'를 인도하고, 피고 D은 고양시 일산동구 L 임야 5,580㎡ 중 제1심 판결 별지 감정도(1) 표시 72, 15, 16, 73 내지 76, 7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ㅁ) 부분 지상 건물 101㎡를 철거하고, 같은 토지 101㎡를 인도하고, 피고 E은 같은 L 임야 5,580㎡ 중 같은 감정도(1) 표시 65 내지 71, 6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ㅁ) 부분 지상 건물 87㎡를 철거하고, 같은 토지 87㎡를 인도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효두

판사박이규

판사이흥권

별지